



미국의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개혁 논의

박정희 선임연구원

역사

미국 하원은 오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인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을 재승인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함.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NFIP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홍수보험을 제공해 왔으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홍수피해로 인해 예산문제 논의가 불가피함. 일부 의원들은 NFIP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출로 인해 실제 민간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재승인을 통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미국 하원은 오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인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¹⁾을 재승인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안²⁾을 제출함

- NFIP는 홍수 발생 시 주택소유자에게 저렴한 홍수보험을 제공하여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관리하는 정책보험임
 - 홍수보험은 NFIP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인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홍수로 인한 직접적인 범람을 원인으로 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며 건물 등의 보상에 대한 보험은 별도 가입 가능함³⁾
-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그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NFIP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자에게 보험을 제공해 왔으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홍수피해로 인해 예산문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임⁴⁾

1)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은 1968년 국가홍수보험법(National Flood Insurance Act)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해피해를 경감 및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부터 승인된 재해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21세기 홍수개혁법(the 21st Century Flood Reform Act; H.R. 2868),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보험계약자법(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Policyholder Protection Act of 2017; HR 2875) 등 7가지 관련 법안임

3) 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계약이 발효될 때까지 30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NFIP에 직접 가입은 불가함

4) 2012년 7월 Biggert-홍수보험개혁법(Biggert-Waters Insurance Reform Act) 발표를 통해 FEMA가 거의 모든 할인보험료

■ 2016년 기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하는 NFIP의 보험계약 건수는 508만 건, 보험가액은 1조 2,545억 달러, 연간보험료는 33.3억 달러임

- 10년 전 보험계약 건수와 보험가액의 상승에 비해 보험료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⁵⁾
- 특히,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전체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 이후 매년 홍수피해로 인한 해당 프로그램의 부채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⁶⁾
 - NFIP는 재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재무부에 2016년 기준으로 246억 달러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이자만 연간 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주(州)별 NFIP 계약 건수는 플로리다가 1,783,152건, 텍사스 604,400건, 루이지애나 452,669건 등의 순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루이지애나는 지난 40년 동안 NFIP의 홍수계약 가운데 약 10%를 차지했지만 NFIP 전체 보험금의 34%를 지급하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의원들은 NFIP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다한 정부보조금 지출로 인해 실제 민간보험과 같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재승인을 통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NFIP는 여러 차례 대홍수가 발생함에도 각 부동산에 대한 홍수위험을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의 위험지대 내 과거 평균 손실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음
 - 이에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홍수보험요율지도(FIRMs: Flood Insurance Rate Maps)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민간보험과 같은 리스크기반 가격 책정이 필요함
- NFIP 보험료 수준은 평균 시장 가격의 절반 정도⁷⁾이며, 의회는 부정확한 가격 책정 방법을 현대화하는 등 민간보험을 장려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2014년 NFIP가 홍수 보험에 대한 시장 효율에 근접한 금액을 청구하려 하자 계약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후 몇 가지 임시 개혁조치를 취소한 바 있음

■ 한편,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NFIP가 홍수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경과는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될 것이라며 재승인을 촉구함 **kiri**

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예비기금을 설정한 바 있었으나 보험료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보험계약자들의 반발로 미의회는 2014년 3월 연방주택소유자홍수보험법(HFIAA14)을 통과시켜 2012년 가격 인상의 많은 부분을 철회하였음

5) <https://www.fema.gov/statistics-calendar-year>, 2010년 말 보험계약 건수 551만 건, 보험가액 1조 540억 달러, 연간 보험료는 22.6억 달러였음

6)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7. 4), “Flood Insurance, Comprehensive Reform Could Improve Solvency and Enhance Resilience”, Report to Congressional Addressees

7)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1. 7),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Past, Present and Future?”